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77

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조정훈·성일종·서지영

김대식 · 김장겸 · 김소희

인요한 · 김예지 · 김민전

김용태 · 김미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미국,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·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. 한국 역시 스마트폰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기준 만 3~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%이며 만 10~19세는 40.1%나 되었음. 특히, 청소년(36.7%)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음.

이에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하고,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3(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)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(휴대전화, 태블릿PC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기를 말한다)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육 목적의 사용,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0조의3(학생의 휴대전화 사용
	지도)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
	<u>기기(휴대전화, 태블릿PC 등</u>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
	기기를 말한다)를 사용하여서
	는 아니 된다. 다만, 교육 목적
	의 사용, 긴급한 상황 대응 등
	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
	허용하는 경우에는 스마트기기
	를 사용할 수 있다.
제20조의3(교원 개인정보의 보호)	제20조의4(교원 개인정보의 보호)
(생 략)	(현행 제20조의3과 같음)